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09.07)

□ 논의 배경

- 농협은 창립 이래 지난 50년 가까이 현행 사업 틀을 유지해왔음.
- 경제 및 신용사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실익 증대 및 회원조합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지에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추진됨.
- 농지 감소와 농업인구 고령화 등 농업기반이 악화되고 농산물 유통과 금융산업의 대형화·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구조에 대한 모색이 불가피한 상황임.
- 또한 경제사업의 지속적인 적자 구조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신용사업 역시 농협의 사업을 뒷받침하는 수익센터(캐시카우) 역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논의가 재촉됨.
- 특히 국제회계기준(IFRS) 도입을 기화로 협동조합 금융에 대한 특별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의 출자와 이익잉여금 적립을 통한 자기자본 조달만으로는 자본 확충의 한계상황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절박성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.

□ 기존의 개편 안

- 현재까지 제시된 농협 사업구조개편 모델은 농협경제연구소 안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협개혁위원회안, 지난 2007년 정부 안 등이 있음.
- 농협경제연구소 안(2009. 2월)
 - 현행법 틀 내에서 중앙회와 경제 및 금융지주회사로 순차적으로 분리
 - 초기 필요자본금은 17조원으로 하되 부족자본금은 정부가 2조원, 나머지 2조8,000억원은 일반투자를 통해 모집

○ 농림수산물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 안(2009. 3월)

- 중앙회를 전국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로 전환하고 사업은 경제와 신용지주회사 형태로 분리, 분리 시기는 2011년
- 자본금은 18조2,000억원으로 부족자본금 6조원은 농협 내부에서 조달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출자

○ 2007. 3월 발표 정부 안

- 농협법 틀 안에서 중앙회 아래 경제와 신용 독립법인으로 분리해 일선조합과 중앙회가 경제 및 신용법인에 출자, 분리 시기는 2017년
- 필요자본금은 17조 5,000억원으로 추가 자본금은 농협이 매년 8,250 억원씩 적립해 충당

□ 논의 쟁점

○ 사업구조개편 시기 및 형태

- 정부의 농협개혁위원회는 그 시기를 2011년으로 잡고 있으나, 현 정부 임기 내인 2012년이나 국제회계기준 적용과 연계한 2014년 등도 주요 고려 대상임.
- 개편의 형태는 논란이 가장 큰 부분으로 지주회사와 연합회안이 제시돼 있음.
- 중앙회의 명칭은, 농협개혁위가 현행 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변경을 제안한 바 있으나, 명칭 변경에는 브랜드 가치나 정체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.

○ 필요자본금 산정과 조달 방안

- 사업구조개편이 농협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대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자본금 산정은 조합원과 조합의 실익 극대화, 자본 배분의 효율성과 배분자본의 수익성을 고려해야 함.
- 자본금 조달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과 시기·대상·발행한도 등이 감안돼야 할 것으로 지적됨.

○ 상호금융의 별도 법인화 문제

-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리와 상품 등을 일체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독립 법인화는 필요하지만 업무영역 확대나 조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대두됨.
-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의 별도 조직 유지 또는 기능별 재편 문제, 공제부문 별도 법인화에 따른 자본금 적립과 각종 특례규정 유지 여부 등의 쟁점도 있음.
- 그 외, 교육지원사업비와 경제사업 투자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조달 방안 마련과 개편에 따른 금융부문의 금고예금 유치 경쟁력 문제

□ 기본 방향과 원칙

- 경제사업은 자립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농업인 실익을 제고하고, 신용사업은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통해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
 - 상호금융 역시 장기적으로 농협 금융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반은행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,
 - 조직의 지배구조는 협동조합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조직은 기업 형태로 전문화·대형화
- 개편 이후 조합원과 조합·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현재 구조 보다는 나은 실익 제공
 - 조합원과 조합이 중앙회를 통해 분리되는 사업체를 소유하고 통제하면서 수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추진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함.
 - 조합과 중앙회가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도출
 - 제도나 비용 및 시너지 창출이 개편 전에 비해 유리할 것

□ 추진 경과 및 일정

○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중앙위원회 출범 (9.1일)

- 공동위원장: 이덕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,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(중앙회 이사)
 - 출범 직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농민단체를 3명에서 6명으로, 학계 인사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위원 구성을 당초 20명에서 모두 25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‘사업구조개편 중앙위원회 운영규정’을 의결
- 향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1월까지 사업구조개편 방안을 확정 후, 정부에 농협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임.